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12. 20.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1년 11월 14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1년 11월 16일

라. 상정일자 :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위원회(2011.12.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정희)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이 일부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2011.9.29. 공포)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현재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확대하여 임신공무원에게도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도록 개정(안제24조 제4항)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순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현 영)

- 이 개정 조례안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를 부여하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24조제4항에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로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함.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 안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본문내용 중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변경한 것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2011. 5. 26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개정한 것으로 이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등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여성”이라는 용어로 변경한 것으로 보여 지며,
- 안 제24조제4항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위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이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뿐만 아니라 임신공무원에게도 건강관리와 태아보호를 위한 시간을 줌으로써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육아와 출산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으로 보여 짐.
-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법체제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내용중 “자는”과 같은 용어를 “사람은”으로 수정하는 등 조례안의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일부 용어를 수정함.

나. 주요골자

- 안 제3조의2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 안 제4조 제2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하며,
- 안 제9조 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 안 제9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 안 제10조 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 안 제10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 안 제18조 제2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 안 제20조 제2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며,
- 안 제23조 중 “각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 안 제24조 제1항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하며,
- 안 제24조 제3항 중 “매생리기와”을 “매 생리기와”로 한다.

5.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9호
----------	-----------

제안년월일 : 2011. 12.

제출자 : 권영식 위원외 1인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내용중 “자는” 과 같은 용어를 “사람은” 으로 수정하는 등
조례안의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일부 용어를 수정함.

2. 주요골자

- 안 제3조의2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 안 제4조 제2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하며,
- 안 제9조 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 안 제9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 안 제10조 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 안 제10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 안 제18조 제2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 안 제20조 제2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며,
- 안 제23조 중 “각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 안 제24조 제1항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하며,
- 안 제24조 제3항 중 “매생리기와”을 “매 생리기와”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의2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 안 제4조 제2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하며,
- 안 제9조 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 안 제9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 안 제10조 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 안 제10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 안 제18조 제2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 안 제20조 제2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며,
- 안 제23조 중 “각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 안 제24조 제1항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하며,
- 안 제24조 제3항 중 “매생리기와”을 “매 생리기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는 <u>지방공무원법</u> (이하 “ <u>법</u> ”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u>지</u> 방공무원(이하 “ <u>공무원</u> ”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방공무원법</u> 」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u>지</u> 방공무원----- ----- ----- -----.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선서) ① <u>공무원</u> 은 취임할 때 <u>법</u> 제47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조(선서) ① <u>서울특별시영등포구 지방공무원</u> (이하 “ <u>공무원</u> ”이라 한다)----- 「 <u>지방공무원법</u> 」 (이하 “ <u>법</u> ”이라 한다) 제47조 -----.	제2조(선서) (개정안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개정안과 같음)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u>자</u>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2(비밀엄수) ----- ----- ----- ----- ----- -----.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u>사람</u>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1. ----- 따라 ----- -----	1. (개정안과 같음)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2. 3. (개정안과 같음)
4. <u>기타</u>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u>그 밖에</u> ----- ----- ----- ----- -----.	4. (개정안과 같음)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생략)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
여야 한다.

③ (생략)

제5조(친절, 공정) ①、②
(생략)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
한 일직, 숙직 방호원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
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
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
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
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
는 당직비와 기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별표2-----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친절, 공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수행
할 때 -----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그 밖에 -----

----- 그 밖의

② -----

그 밖에 -----

③ (현행과 같음)

④-----

----- 그 밖의 -----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별표 2-----

-----.

③ (개정안과 같음)

제5조(친절, 공정)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생략)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기일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9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근무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

제8조(출장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의-----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파견근무)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9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근무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은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생략)

②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생략)

2.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제18조의 재직기간

- 그 밖에 -----
-----.

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해당-----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

1. (현행과 같음)

2. ----- 따
른 -----
----- 남은 -----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 - 재직기

제10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해당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개정안과 같음)

이라 함은 「공무원연급법」 제 23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 3. (생략)

제20조(연가계획 및 허
가) ① (생략)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연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④ (생략)

⑤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

간 이 란

1. ~ 3. (현행과 같음)

제20조(연가계획 및 허
가)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 _____
_____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
에 _____
_____ 대해서 _____
_____ . _____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범위

1. ~ 3. (개정안과 같음)

제20조(연가계획 및 허
가)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 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 29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④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 21 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생략)

②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12월-해당연도 휴직기간

○ 휴직자의 연가일수=-----×해당연도 연가일수

12월

③ (생략)

④제22조제1항의 규정

-----.

⑥-----

----- 범위-----

----- 다

음 연도의-----

-----.

제 21 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따라 산

정한-----

③ (현행과 같음)

④-----

⑥ (개정안과 같음)

제 21 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 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②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3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따른 -----

-----.

제22조(병가) ①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연 60일의 범위 -----

-----.

1. 2. (현행과 같음)

② -----

----- 연 180일의 범위 -----
-----.

③ (현행과 같음)

제 2 3 조 (공 가) -----
----- 각 호의 어느 하나 -----

제22조(병가) ① (개정안과 같음)

1. 2.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 2 3 조 (공 가) -----
----- 각 호의 어느 하나 -----

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
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

3. 4. (생략)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
단 또는 「국민건강보
험법」 제 47조에 따
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생략)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
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
가능한 때

8. ~ 10. (생략)

제24조(특별휴가) ①공무
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정조사가 있을 때
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정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
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
가기간은 출산 후에 45
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기간의-----
-----.

1. ---그 밖의-----

2. -----
-----그 밖의-----

3. 4. (현행과 같음)

5. -----
-----「국민건강보
험법」 제47조-----

6. (현행과 같음)

7. -----
-----그 밖의-----

8. ~ 10. (현행과 같음)

제24조(특별휴가) ①

-----그 밖의-----
-----별표3의 기준
에 따른-----
-----.

② -----여성공무원
에 대해서-----

-----.

-----기간의-----
-----.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7. (개정안과 같음)

8. ~ 10. (개정안과 같음)

제24조(특별휴가) ①

-----그 밖의-----
-----별표 3의 기준
에 따른-----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
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
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
로 한다.

④ 생후 1년미만의 유아
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
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 ⑨ (생략)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
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
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
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
을 수 있다.

⑪、⑫ (생략)

제26조의2(공무외의 국외
여행) 공무원은 휴가기
간의 범위안에서 공무외
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30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
다.

1. 2. (생략)

③ 여성공무원-----

-----.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
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
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공
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
보호를 위하여 1일 1시
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
을 수 있다.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 5일
이내-----
-----.

⑪、⑫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공무외의 국외
여행) -----
----- 범위

-----.

제30조(공무원의 범위

- 각 호-----.

1. 2. (현행과 같음)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
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
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
로 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⑤~⑨ (개정안과 같음)

⑩ (개정안과 같음)

⑪、⑫ (개정안과 같음)

제26조의2(공무외의 국외
여행) (개정안과 같음)

제30조(공무원의 범위
(개정안과 같음)

1. 2.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89 호
----------	--------

제출연월일 : 2011.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2011.9.29. 공포)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임신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휴가제 신설(안 제24조 제4항)
-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변경.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순화

3.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 라.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법 제47조”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로 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 2””를 “별표2”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할 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는 “대해

서는 다음 해에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잔여”를 “남은”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직기간이라 함은”을 “재직기간이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단서 중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를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차년도”를 “다음 연도의”로 한다.

제21조제2항 후단 중 “의하여 산정된”을 “따라 산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연60일의 범위안”을 “연 60일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180일의 범위안”을 “연 180일의 범위”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기간”을 “기간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별표 3의 기준에 의한”을 “별표 3의 기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를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제10항 중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한다.

제26조의2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 ----- -----.
제2조(선서)	①공무원은 취임할 때 별 제47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조(선서)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3. (생략)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조의2(비밀엄수)	----- ----- ----- -----.	1. ----- 따라 ----- 2.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생략)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별표2-----	

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5조(친절, 공정) ①、② (생 략)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
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기타 사
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
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
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
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비와
기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생 략)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기일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친절, 공정)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수행할 때 -----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 그 밖에 -----

----- 그 밖의 -----

-----.

② -----
----- 그 밖에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그 밖의 -----
-----.

제8조(출장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그 밖의 -----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9조(파견근무) ①、② (생략)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은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생략)

②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생략)

2.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
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제18조
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③ (현행과 같음)

제9조(파견근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그 밤에 --
-----.

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_____

_____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_____.

1. (현행과 같음)

2. ----- 따른 -----
----- 남은 -----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
 - 재직기간이란 -----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 3. (생략)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략)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④ (생략)

⑤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

-----.

1. ~ 3. (현행과 같음)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 대해서-----
-----.

③, ④ (현행과 같음)

⑤-----

범위-----

-----.

⑥-----

범위-----

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생략)

②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12월-해당연도 휴직기간

○ 휴직자의 연가일수=-----
-----×해당연도 연가일수

12월

③ (생략)

④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

----- . ----- 다음 연도의 -----
-----.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따라 산정한 -----

③ (현행과 같음)

④----- 따른 -----

----- . -----

-----.

제22조(병가)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
----- 연 60일의 범위 -----
-----.

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②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3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4. (생략)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②-----
----- 연 180일의 범위-----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공가) -----
----- 각호의 어느 하나 -----
----- 기간의 -----
-----.

1. ---그 밖의 -----

2. -----
그 밖의 -----

3. 4. (현행과 같음)

5. -----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6. (현행과 같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8. ~ 10. (생 략)

제24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때에
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
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
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
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
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 ⑨ (생 략)

⑩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
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
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
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⑫ (생 략)

7. ----- 그 밖의-----

8. ~ 10. (현행과 같음)

제24조(특별휴가) ①-----
-----그 밖의 -----
--- 별표3의 기준에 따른 -----
-----.

② -----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

③여성공무원-----

-----.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
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1일 1시간
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 5일 이내-----
-----.

⑪, ⑫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
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안에서 공무외
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30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
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2. (생략)

제26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
----- 범위 -----
-----.

제30조(공무원의 범위) -----

----- 각호-----.

1. 2. (현행과 같음)